

의안번호	제 361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이상식 의원 등 6인
발의연월일	2020년 3월 4일

충청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61
----------	-----

발의연월일 : 2020년 3월 4일

발 의 자 : 이상식·박우양·임영은·박문희·
이상정·송미애 의원(6인)

1. 제안 이유

- 도내에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지원하고 육성함으로써 향후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적응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미래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사업의 위탁(안 제7조)
- 미래자동차산업 지원사업에 출자·출연·보조·융자 등(안 제8조)
- 미래자동차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한 업무의 위탁 및 지원(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 : 붙임

5. 예산조치 : 72,600백만원(국비 30,800, 도비 19,300, 시군비 21,100, 기타 1,400)

6. 관련부서 협의 : 신성장산업국 산업육성과와 협의

7. 입법예고 : 2020.2.11 ~ 2020.3.1.(20일간, 특이의견 없음)

충청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미래자동차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적응함은 물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자동차산업”이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된 산업과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1의2호에 규정된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동기 구동기반의 전기차, 수소차 등의 자동차 제조업과 자동차 소재·부품제조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란 지역의 미래자동차 관련 기업의 제조 및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과 미래자동차 관련 연구기관, 사단법인, 단체 또는 사업자가 정부나 충청북도 또는 기초자치단체와 지원·협의를 하에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산·학·연 협력체계”란 충청북도, 공공기관, 기업, 단체, 법인 및 대학·연구기관 등이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하여 상호 연계하거나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래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

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 도지사는 자동차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자동차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자동차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 자동차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인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그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①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은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따른다.

제7조(사업시행 대상) 도지사는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게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도가 출연·출자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

학교,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

4. 그 밖에 도지사가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제8조(각종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출자·출연·보조·융자 등을 할 수 있다.

1. 애로기술지원, 신기반기술개발, 시제품 및 신상품개발 등 상용화 기술개발
2. 미래자동차산업 관련 유망기업·연구소 유치 및 육성
3. 미래자동차산업 관련 집적화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4. 기술인력 양성, 창업보육, 생산지원 확충사업, 시험·인증사업
5. 기업 유동성 자금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금 출자·출연·보조·융자 등
6. 미래자동차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와 각종 행사의 개최 및 유치
7. 친환경(전기, 수소, 대체) 자동차 연구, 인프라 조성 및 운영
8. 친환경 스마트카로의 업종전환 유도 및 기업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미래자동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자동차 관련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3. 기업 등으로 기술이전 및 기업 기술지원과 자문
4. 그 밖에 도지사가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업무의 위탁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미래자동차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해 제8조의 사업을 제7조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위탁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제7조의 기관 등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경비를 지원한 경우 관련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3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을 위해 관련 기관 등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 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도지사는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단체, 법인, 외국인 등을 포함한다)에게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2. “자율주행시스템“이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주변상황과 도로 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하는 자동화 장비,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한 일체의 장치를 말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1의2. “원동기“란 자동차의 구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내연기관이나 전동기 등 동력발생장치를 말한다.

충청북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미래의 자동차산업은 기존 내연기관에서 스마트카로 산업구조가 급변화됨에 따라 정부는 이를 신성장산업으로 선정,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글로벌 저성장으로 위축된 지역 자동차산업 생태계의 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발굴·지원하여 도내 미래자동차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비용발생 요인

- 동 조례안 제8조 미래자동차산업 지원 사업비

3. 관련 조문

- 안 제8조의 제1호~제9호

4. 비용 추계결과

- 가. 재정수반요인 :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위한 지원 사업비
-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 다. 추 계 결 과 : 72,600백만원(국비 30,800, 도비 19,300, 시군비 21,100, 기타 1,400)
- 라. 재원조달방안 : 국·도·시군비 및 자부담 등

5. 연도별 비용추계서(세출)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자동차산업육성 등 4개 사업	72,600	22,200	15,100	16,300	9,500	9,500

※ 단위사업별 비용추계내역 : 별첨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단위사업별 5개년(2020~2024) 투자계획

사업명	재원별	사업비(천원)					
		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4개 사업	합 계	72,600,000	22,200,000	15,100,000	16,300,000	9,500,000	9,500,000
	국비	30,800,000	9,800,000	6,500,000	6,500,000	4,000,000	4,000,000
	도비	19,300,000	4,200,000	4,300,000	5,000,000	2,900,000	2,900,000
	시군비	21,100,000	7,700,000	3,800,000	4,400,000	2,600,000	2,600,000
	자담	1,400,000	500,000	500,000	400,000	0	0
자율자동차 테스트베드 구축	소 계	14,500,000	7,800,000	3,7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국비	9,800,000	5,800,000	2,500,000	500,000	500,000	500,000
	도비	2,300,000	1,000,000	600,000	300,000	200,000	200,000
	시군비	2,400,000	1,000,000	600,000	200,000	300,000	300,000
수송기계 부품전자파 센터구축	소 계	30,900,000	13,200,000	7,900,000	6,800,000	1,000,000	1,000,000
	국비	11,000,000	4,000,000	3,000,000	3,000,000	500,000	500,000
	도비	7,300,000	2,500,000	2,200,000	2,200,000	200,000	200,000
	시군비	11,200,000	6,200,000	2,200,000	2,200,000	300,000	300,000
	자담	1,400,000	500,000	500,000	400,000	0	0
충북자동차 기업고도화 지원	소 계	7,200,000	500,000	1,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국비	0	0	0	0	0	0
	도비	4,700,000	7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시군비	2,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자동차거점 기관구축 (신규추진)	소 계	20,000,000	0	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국비	10,000,000	0	1,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도비	5,000,000	0	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시군비	5,000,000	0	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